

문제 1.

1. 1문단에서 (나)를 총 4가지로 분류하셨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언어규범의 파괴로 인한 두가지 부류로만 나눠주셨어도 충분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 비교가 아닌 '대응적 비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시문 가-1,2 의 주장에 따라 (나)를 분류하라는 의도예요. 따라서 가-1,2 의 공통 주제인 '규범'을 기준으로 (나)를 나누는 것이 의도이고 이 외적인 명사화, 새로운의미 등등은 사실상 의미없는 진술입니다.
2. 1번지적에서 지적한대로 대응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답안에서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가)의 내용을 끌어오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1~2)를 기준으로 (나)를 보셨어야 되요.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규범의 파괴로 인한 대응을 하셨어야 됩니다. 내용상으로도 오류입니다.
3. 전체적으로 발문을 이해하지 못한 답안 서술로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간 답안입니다. 논리상의 오류는 크게 없으나, 발문상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고 주관적 개입은 플러스 알파적 요소로 써주셔야 좋은 답안입니다.

문제 2.

1. 일단, 첫 문단부터 표에대한 해석을 해야되는데 이 문제또한 (다)를 통해 (라)를 보는 것이 발문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1문단은 (다)에 대한 서술을 해주셨어야 해요. 기준 제시문을 설정해야 (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2문단 대응에서 (다)에 대한 설명없이 바로 대응이 들어가 버려 어색합니다.
2. “법시행 성별 지원율에 대한 구체적 법률의 존재 유무와 사람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기서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구체적 법률까지 사용한 점은 좋으나, 사실 네덜란드가 언급은 되지 않았을 뿐 법률이 없다고 추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뭐, 추측은 가능하므로 사실 큰 문제는 없으나 다른 문제를 서술하실 때 이와 같은 추측성 답안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A국가는 없는 반면 B국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A국가의지원자 성비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의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경우 그 사안과 관련된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혹은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조금씩 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여기서 A국가도 구체적 법률이 없다고 '추측'하셨는데 기준 제시문과 대응 제시문 모두 제시되지 않은 '법률상의 유무'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4.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는 법률X -> 사회변화 한국 법률O -> 사회변화 X로 보셨는데, 미국은 법률이 있음에도 사회가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논지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